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10호
전부개정 2015년 7월 30일 조례 제1409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2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년 7월 25일 조례 제1586호
일부개정 2018년 5월 11일 조례 제165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년 2월 19일 조례 제1885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1, 2022. 1. 13>

제2조(소재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각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5. 11>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2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5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1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대원2동, 신장2동 청사 개청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11. 1>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오 산 시 청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307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332-13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55-5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문헌공로 45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79번길 48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19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초평중앙로 77